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1. 일 시: 2024. 9. 25.(수) 14:00~1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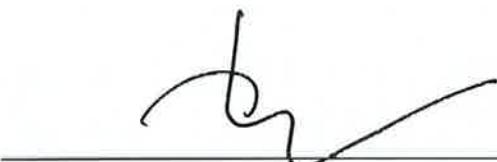
2. 장 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3. 출석인원: 별지 기재와 같음

4. 내 용: 별지 기재와 같음

등록번호	3805
등록일자	2024.10.18.
처리 과	기획운영담당관실

위 원 장



간

사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4차 회의 회의록

2024. 9. 25.

사법정책자문위원회

I. 개요

- 일시: 2024. 9. 25.(수) 14:00~16:25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권오곤(위원장)
 - 김영화, 김영훈, 이경춘, 전원열, 조현욱, 차병직(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윤성식(간사), 이문렬(서기)
- 배석자
 - 이창경(주무위원)
 - 황인성(실무지원단장), 이재혁, 이지옹, 허민, 고병석, 고원혁(이상 실무지원단원)

II. 의사개요

1. 위원장 인사말씀

-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난 회의에 이어서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논의한 후, ‘고법판사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음
 - 저희가 제2차 회의에서 논의했던 ‘법관임용 위한 적정 법조경력 요건 검토’ 주제와 관련하여,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위원님들이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함

2. 제3차 회의 회의록 확정

-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을 확정하



였음

3.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가.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발언, 이경춘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건의문의 개선방안에 나온 법원장 보임 후보군의 범위와 관련하여, 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식과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에 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람

○ 이경춘 위원

-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건의문 형태로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었음
- 법관인사 이원화를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타 법원의 훌륭한 법관에게도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후보군을 확대하는 방안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임

▣ 다음과 같은 위원장, 김영훈 위원,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 전원열 위원, 조현옥 위원의 의견 및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법관인사 이원화 이전 고등부장이 된 법관을 후보군에서 배제하는 것에 관한 의견, 추천절차를 거쳐 지방법원 소속 이외 법관도 법원장 후보군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에 관한 의견, 건의문에서 제시한 ‘폭넓게 허용’이라는 문구에 관한 의견, 규모가 큰 법원이나 전문법원 등 일부 법원에 한정하여 후보군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관한 의견 등 해당 주제와 관련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김영훈 위원

- 건의문(안) 중 ‘개선방안’ 2안에서 ‘폭넓게’라는 부분은 지방법원장 후보군 범위



에 관한 원칙을 뒤바꾸는 표현이기 때문에 ‘예외적’이라든지 ‘추가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해 보임

○ 차병직 위원

- 폭넓게 허용한다기보다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음. 한시적으로 필요한 경우 고등법원 부장들 중에서도 지방법원장 보임 가능성 을 열어놓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임

○ 이경춘 위원

- 건의문 개선방안의 1안과 2안이 선택적인 것인지? 아니면 1안에 2안을 추가하는 것인지?

○ 이창경 주무위원

- 1안은 전문위원회연구반의 의견대로 작성한 내용임. 지난 회의 논의과정에서 위원님 몇 분께서 2안과 같은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 건의문에 예시 사항 으로 2안을 준비하였음. 1안과 2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임

○ 이경춘 위원

- 2안은 종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법원장을 보임한다는 원칙을 다시 원점 부터 뒤바꾸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내실 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법원장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전원열 위원

- 2안의 원래 문구는 너무 큰 방향 전환으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표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기본적으로 지방법원장을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만 보임하는 것보다는 필요한 경우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1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 2안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또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령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타 지역의 고등 법원장과 견주어 보아도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봄. 이와 같은 법원장이 가지는 상징성이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법원장 후보군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조현욱 위원

- 기본원칙은 이원화를 유지하되, 법원 규모 등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2안 방향 취지에 대해 동의함

나.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소속 법관의 천거 및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사법행정 구현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였으나, 충분한 적임자 추천의 한계, 추천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논란, 실시법 원의 절차적 부담 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법원장 보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바람직한 법원장의 지위와 역할, 적합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에 보임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기준, 법관의 독립과 적정한 사법행정권 행사의 조화 및 균형 등 제반 사정과 법원 내·외부의 요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법관 인사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훌륭한 인품과 재판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소속 법관만의 천거 및 투표 절차보다는 전체 법관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독립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는 새로운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법원 소속 법관이 심급에 걸맞은 재판 및 사법행정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지방법원의 법원장은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는 방안을 지향하되, 법원의 특성과 후보군 등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법원의 종류 및 심급에 관계없이 능력



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로 포함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가. 기초발제

- 이창경 주무위원, 검토 배경, 법관인사 이원화의 연혁 및 추진 현황,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방향, 2024년 정책 변화에 따른 고법판사 제도 개선 세부방안, 지방권 고법판사의 지원 활성화 방안, 전문위원 제1연구반 논의 경과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다음과 같은 위원장, 조현욱 위원, 차병직 위원, 이경춘 위원, 김영화 위원, 전원열 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위원장

- 방대한 양을 꼼꼼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림. 발제를 들으면서 사법부의 법관이라는 자리에 매력을 느끼고 우수한 인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처우를 대폭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음
- 고법판사 순환제도 축소 등 전문위원 연구반의 검토 내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조현욱 위원

- 인사제도를 검토할 때에는 직접적 당사자인 법관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고법판사에 지원하는 법관들은 순환근무가 없다는 점을 기대하고 지원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순환근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차병직 위원

- 건의문에서 제시하는 내용이 재판 보조인력 확충, 보수 현실화 등의 획기적인 대책이 아니라 현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쳐, 법관의 사직이나 재판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수 있음



- 그래도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법관의 처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순환근무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고등법원 재판장 보임시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이경춘 위원

- 기존 고법부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하여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것보다는 폐단을 조금씩 줄여가면서 제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김영화 위원

-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 중앙과 지방 사이의 불균형 문제가 사법부에서도 예외 없이 드러나 수도권과 지방권 고등법원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법관 처우와 관련한 획기적인 예산 증가 등이 없다면 이 문제는 제한된 범위에서 운용의 묘를 보이거나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해결할 수밖에 없음. 전문위원 연구반의 검토결과에 대해 큰 틀에서 이의 없음

○ 전원열 위원

- 상소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법판사 임명이 선발적 성격을 띠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기존의 고등부장제도를 폐지하면서 외관 상 선발적인 성격을 배제한다고는 하였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서울권은 선발 형식이 돼버리고 지방권은 인력풀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 또한, 서울권에서 고법판사로 재임한 경력은 후에 변호사 활동을 할 때에도 유리한 징표로 작용하지만 지방권 고법판사 경력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러한 격차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 대폭적인 처우 개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선에서 제도를 보완하는 건의문 내용에 큰 이견 없음. 다만 건의문에 법관들의 처우 개선을 지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음

○ 김영훈 위원

- 고등부장제도 폐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고등법원이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서 대등한 관계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지방과 서울을 동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한다는 것에 매몰되지 말고,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체재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것처럼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음
- 재판장 보임과 관련하여, 지방법원 부장 경력을 충분히 쌓은 경우에는 고등법원 근무요건을 단축 내지 폐지시키는 방안 역시 고려할 만하다고 생각함

○ 위원장

- 복잡한 문제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공통적으로 법원이 매력 있는 직장이 돼서 우수한 자원이 자궁심을 갖고 열심히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해 주셨음
- 전국적으로 균질한 사법서비스를 위해서 순환근무를 해야 하고, 보임기수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순환근무로 인해 우수 자원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근무를 제한적으로 축소하고 보임 요건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시도라고 생각함

다. 건의문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문을 의결하였음

○ ① 지향점

- 이상적인 심급구조를 통하여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시행된 후 고등법원 판사의 잣은 순환근무로 인하여 심리의 연속성과 생활의 안정성이 저해되고 사직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항소심의 재판 역량을 제고하고 평생법관제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 제도를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가 10여년 이상 시행되었음에도 지방권 고등법원은 여전히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이원화 완성이 지연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판장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신규 보임을 활성



화하여 지방권 고등법원의 재판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② 개선방안

- 항소심 재판의 연속성을 확보하여 소송법상 기본원칙이 충실히 구현되도록 함과 아울러 고등법원 판사가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재판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고등법원 판사의 순환근무는 다른 고등법원의 재판장 공석 충원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지방권 고등법원 판사의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근무한 고등법원 판사가 지방법원으로의 복귀를 희망할 경우 이원화의 정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하고, 지방법원에서 충분한 경력을 쌓은 법관이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된 경우 재판장 보임 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고등법원의 재판장 보임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법관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하에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법관이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15:33경 정회

※ 15:57경 속회

5. 제5차 회의 안건 설명

가.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 ▣ 이창경 주무위원, 논의의 필요성, 주요 쟁점, 위원회 논의 필요 사항 등을 보고함
- ▣ 다음과 같은 위원장의 질의 및 이에 대한 이창경 주무위원의 답변이 있었음

○ 위원장

-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을 마치고 자리를 옮기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이 있는지?

○ 이창경 주무위원

- 사무분담 기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 선보가 유예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은 있으



나, 특정 재판 진행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하지 않았음

○ 위원장

- 특정 재판이 아니라 일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임. 외국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음

나.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 김태창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논의의 필요성, 공무원 선발제도, 법원 9급 공채 선발, 2011년 전국모집으로 제도 변경한 주요 이유, 현행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제도변경방안 및 대안 제시, 법원 조직 및 사법서비스에 미칠 영향, 위원회 논의 필요사항 등을 보고함

6. 제6차 회의 안건 선정

- 위원장, 제6차 회의(11월 예정) 안건으로 ‘공판중심주의의 적정한 운영’, ‘항소심 심리모델 개선’을 선정함

7.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4차 회의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결정함

8.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자료 외부 공개 여부

-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제4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1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 회의록	공개
2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제도	일부 비공개
3	법관인사이원화 제도의 정착을 위한 고법판사 제도 개선방안	일부 비공개
4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사무분담 장기화에 따른 법관 전보인사 주기의 재편 및 유연화 방안)	공개
5	대법원장 부의 안건 설명자료 (권역별 선발 등 법원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공개



III. 다음 회의: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5차 회의

■ 일시: 2024. 10. 17.(목) 14:0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끝).